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요소와 근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요소를 무상숙식의 편의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국적만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822-3)

Q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시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범을 말한다. 이는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 쌍방의 협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근로계약과도 달리 전체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Q 국적만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이 아니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규격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적용한다. 산업용전력은 (갑)·(을)·(병)으로 구분되는데,

가. 산업용전력(갑)은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고객에게 적용하며

나. 산업용전력(을)은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과 기타사업중 계약전력 300kW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다. 산업용 전력(병)은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고객과 기타사업중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일반용 적용대상】 일반용전력과 업무용전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A 종전에는 업무용 전력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명칭을 일반용 전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 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산업용전력은 어떤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A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서 작성한 공급약관 "산업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흉부외과장 김준성



될 수 있는 전신 상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폐암의 병리학적 소견상 비소세포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2) 소세포암의 치료 : 대부분 항암제 치료를 시행하며, 국소적인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

4. 폐암의 예방

폐암의 대부분은 흡연과 관련된 금연은 가장 중요한 폐암의 예방법이다. 특히 폐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군에 속하는 사람이 흡연을 하면, 폐암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

또 균형잡힌 식이요법도 암의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A, C, E가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지용성(비타민 A, E)은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폐암에는 육식이 좋지 않다는데, 무는 음식은 좋다는 말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소화에 지장이 없는 한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이 폐암 예방의 지름길이다.

☞ 포천병원(031-539-9114)

폐 암

종양이란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을 시작한 후, 기하급수적인 과증식을 하고 있는 상태의 덩어리(mass), 즉 종괴를 일컫으며, 양성종양(benign)과 악성종양(malignant)으로 나뉘어진다. 악성일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우의 암이며, 종양이 발생한 신체장기의 위치에 따라 간암, 위암, 자궁암, 폐암 등으로 불리운다.

1. 폐암의 증상 전형적인 폐암 환자의 모습은 50.60대의 도시 주민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다. 하지만 젊은 남자와 흡연력이 없는 여성에게서 폐암이 생기는 것도 드물지는 않다. 폐암 환자들의 5~

15%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발견되기도 하며 증상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 전이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며,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다.

2. 폐암의 진단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흉부촬영 검사, 현미경적 검사, 비디오 흉기 검사, 생검, 전이여부 확인검사 등을 통해 폐암인지 여부를 가려내며, 그 진행정도 등을 판단한다.

3. 폐암의 치료 1) 비소세포암의 치료 : 폐암의 진행 병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치료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상태 또한 동일하지 않으며 환자 개개인에 따라 치료에 견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여부】 甲은 그 소유 임야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丙이 甲에게 등기명의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이중매도 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甲은 결국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민법체계는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므로 비록 이중으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는 채권 발생행위이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권리가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하면 甲이든 丙이든 채권계약의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

로서는 충돌하지 않으며,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의 단계가 아닌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4616판결). 그런데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다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2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57 판결), 제2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득자(轉得者)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전득자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선의(善意)·악의(惡意)를 불문하고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丙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가 될 경우에는 甲과 丙이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서, 甲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선의의 전득자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甲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乙은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든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중매매한 甲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어린이 성폭력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성적 호기심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의 성적호기심과 잘못된 성행위를 구분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폭력의 개념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성인 또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발달단계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이 현저히 강하거나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서 놓여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도 어린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을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장난감을 주면서 유인하여 어린이를 성적행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어린이에게 협박을 하여 비밀유지를 강요하므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가해자를 어린이가 아는 사람일 경우 어린이는 어른을 신뢰하고 가해자와의 비밀유지 등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이에게 강간, 성추행, 가해자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매춘행위를 포함하는 심각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누가 어린이 자녀들에게 성폭력을 할까요?】 어린이 성폭력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 학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가해자가 어린이가 신뢰하는 부모, 친척, 동네사람, 교사, 기타 등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자아이보다 대부분이나 남자아이의 피해도 약 4%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2007년 개정 소득세법】 금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중 중요한 개정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A 소득세법의 중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기본공제 대상인이 적용수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이 체육시설에서 교습 받는 학원비를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학점 이수를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비거주자의 체납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1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47번 국도 4차선 인근 도로옆

최적의 입지공간 공장임대

전여 15동

제조업·철공장·금속공장 등에 최적

보증금 : 1500만원 월 임대료 : 180만원

공장등록필, 한동에 동력 30kw, 넓은 주차공간 보유

